

민주연구원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강득구)은 10월 7일(수),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의 열두 번째 브리핑으로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강득구 원장은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산업 맞춤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도입되었고 소규모로 분산된 기존 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 지자체 중심의 초광역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이 반도체·AI·바이오·미래차·로봇·재생에너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의 산업성장을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R&D 지원을 패키지로 결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기술혁신과 투자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메가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 정책브리핑에서는 주요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제언 그리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규제 특례 쟁점은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대상 확대 및 기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장시간 노동의 상시화, 건강권 침해, 비정규직의 상시화, 노동시장 양극화, 파견근로자의 안전망 약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특히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총근로시간 관리와 건강권 보호를 결합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되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연속·야간근로 제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보전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정기 건강검진과 과로 위험군 관리 등 법정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역시 메가특구 소재 기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국가 첨단전략기술과 직접 관련된 프로젝트형 업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 파견근로 특례도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기보다 연구개발 지원, 시험·분석, 장비 유지·보수, 전문기술 지원 등 첨단산업의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기능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정책브리핑은 이 같은 노동규제 특례의 기본원칙으로 ‘유연성(Flexibility) + 보호성(Protection) +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시했다. 산업현장의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을 인정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고용안정·임금·산업안전을 보호하고, 특례 적용기업의 성과와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책임체계를 법률에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특례 적용기업에 노동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례 신청 단계에서 특례의 필요성, 예상 근로시간, 고용효과, 임금변화, 산업재해 위험, 건강보호대책, 정규직 전환계획, 기간제·파견 활용계획 및 노사협의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요구를 책임 있는 특례 신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특례는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기보다 ‘제한적 실증 → 데이터 기반 평가 → 제도 보완 → 확대 여부 결정’의 단계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 이후 독립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지·수정·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성과뿐 아니라 고용,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 정규직 전환 등 노동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기업, 노동·산업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메가특구 노동정책협의회’를 설치해 노동규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심의하고, 특례 적용기업의 근로시간·고용·산재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 해외 사례에서도 특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식은 예외적이며, 근로시간·인력운용·행정절차 등을 제한적으로 유연화하면서도 최저임금·산업안전·사회보험·기본적 노동권 등 핵심적인 노동보호 기준은 유지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정책브리핑은 메가특구의 성공 여부가 ‘노동규제를 얼마나 많이 완화하느냐’가 아니라 ‘첨단산업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동시에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는 반드시 상충하는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끝.